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84

발의연월일: 2025. 1. 14.

발 의 자:이철규·유상범·김선교

서일준 • 박상웅 • 조정훈

김은혜 · 엄태영 · 강승규

박성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광업인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생산보국이라는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석탄과 일반 광물을 생산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음.

주요 선진국들은 공식적으로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광산사고 순 직자들을 기리고 광업의 중요성과 광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날로 삼고 있지만,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근간이었던 석탄산업이 역사 속 으로 사라지고 있음에도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 일은 아직도 제정되지 아니함.

이에 순직한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산업원료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지하 작업장 등에서 헌신하고 있는 광업인들 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광복 후 새로운 광업 법을 제정, 공포한 날(1951년 12월 23일)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 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6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439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6조의3(광업인의 날) ① 국가산업에서 광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광업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정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20439호 광업법	법률 제20439호 광업법		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		
<u> <신 설></u>	제86조의3(광업인의 날) ① 국가		
	산업에서 광업의 역할과 중요		
	성을 알리고 광업인의 자부심		
	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2월		
	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정한다.		
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		
	항에 따른 광업인의 날에 적합		
	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		
	노력하여야 한다.		